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한국, 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 제정예규 행정 예고

- 2024년 10월 24일,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식품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위생요건 체결, 수출업소 등록,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 가능함
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및 원문 참조)

- 대상 :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·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

구분	주요 내용
제 3조 (수입허용 요청)	수출식품 등의 수출을 위하여 수출상대국 정부에 수입허용 요청 가능하며, 규정에 따라 수출상대국이 요구하는 위생관리제도, 시험-검사기관, 수출업소등에 대한 자료 제출 가능
제 4조 (현지실사 지원)	수출상대국 정부에서 현지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협의, 자료 제공, 현장참여, 통역 및 교통편 지원 등에 협조할 수 있음

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수출식품등의 안전성 지원 절차 및 방법」 제정예규 행정예고, 2024.10.24

호주,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 수입요건 업데이트

- 2024년 10월 25일, 호주 농림수산부(DAFF)는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의 수입 요건을 업데이트함. 이번 업데이트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품만 대장균(대장균)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됨. 한국의 경우 굴은 수출이 불가능함
- 수입 요건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- 이매패류 및 이매패류 제품은 위험 식품으로 분류되며, 생물보안수입조건(BICON)을 충족해야함
- 레토르트 제품 및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는 제품은 인증 용건에서 제외됨
- 이매패류 연체동물과 그 제품을 호주로 수입할 경우, 수입신고서(Full Import Declarations, FID) 제출 시 '수출국 정부인증서'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함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출처: Agriculture.gov.au, Bivalve molluscs and bivalve mollusc products, 2024.10.25 (Updated)

호주-뉴질랜드, 일부 제품 사용 허가 및 당 함유 문구에 대한 식품표준법 개정 발표

- 2024년 10월 29일,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협회(FSANZ)는 식품표준법(Food Standards Code)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안 제233호를 발표함
- 주요 내용 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- D-알룰로스 사용 허가(신규 식품 A1247 D-알룰로스)
- 첨가당 관련 문구 수정 : 표준 1.2.7, 표준 1.2.8 및 별표 4에서 당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의미합니다
- 가공보조제 허용(A1284- GM Trichoderma reesei 에서 유래한 Triacylglycerol lipase)

(*) 발효일 : 2024년 10월 29일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출처: Foodstandards.gov.au, FSANZ Notification Circular -301-24, 2024.08.19(UPDATED)

칠레, 동물 내장 및 부산물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 발표

- 2024년 10월 23일, 칠레는 동물 내장 및 부산물의 수입에 대한 새로운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「결의안 No 6942/2024」를 발표함.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발효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- 1) 대상 : 소, 양, 염소, 돼지, 가금류 및 말의 내장 및 부산물(간, 심장, 신장, 위, 창자, 식도, 췌장 등)
- 2) 소, 돼지, 염소, 말의 경우 내장 및 부산물은 세계동물보건기구(OMSA)가 인정한 구제역, 광우병, 리프트밸리열병 등 특정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, 최소 30분 동안 70°C 이상의 내부 온도에 도달하는 열처리를 실시한 후 내장을 포장하여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
- 3) 수입되는 내장 및 부산물은 스페인어와 원산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함

(*) 발효일 : 2024년 5월 23일



SPS

이슈바로가기

출처: WTO Eping, (Notification) G/SPS/N/CHL/776/Rev.1/Add.1, 2024.10.25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

수입통관

이슈바로가기

EU,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제품 EU 수출 검역 및 검사 지침

- 2024년 10월 29일,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EU로 수출하는 열처리 가금육 제품 및 복합식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·검사지침을 발표함. 해당 내용은 영국 수출에도 적용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심층기사 참조)
 - EU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제품 : 열처리 가금육, 복합 식품
 - 수출 작업장 등록 절차
 - EU Traces NT에 수출 작업작업장(원료 닭고기를 도축/생산하는 도축장, 최종 수출 제품을 제조하는 가공장)으로 등록되어야 함
 - 문제 발생 시, 정부는 원인을 파악하고 수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EU측과 협력하여 개선을 요구함

열처리 가금육제품(복합식품 제외)	복합식품
*신청: 검역본부 지역본부장(사무소장)과 식약처 지방청장	* 신청: 식약처 지방청장
- 축산물검역 신청서	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 신청서
-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신청서	
• (검역본부 준비 서류)	
- 영업허가증	
- 품목제조보고서	
- 수출신고필증	
- 수출 열처리 가금육 관련 공인기관 검사성적서	
- 제품 생산 내역서	
-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 사진	
- 원료(식육 또는 가공품)의 수입관련 서류	

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, (EU)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(EU) 검역검사 지침 제정 안내, 2024.10.29

인도, 식품 제품 및 식품 첨가물 기준 개정 발표

- 2024년 10월 25일, 인도 식품안전기준청(FSSAI)은 《식품 제품 기준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첫 번째 개정 규정, 2024》을 발표함.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, 강화 쌀 커널(FRK)관련 조항은 즉시 발효됨
- 주요 업데이트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[원문](#) 참조)
 - 유제품
 - Khoa의 조성 사양 수정: 우유 지방 최소 비율이 **30.0%에서 27.0%로 변경**됨
 - 모짜렐라 치즈의 구성 기준 추가
 - 지방 및 오일
 - 공기 주입 시 질소 또는 기타 불활성 가스만 사용 가능하며, **식물성 지방/오일에 주입되는 가스의 양은 부피의 12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**
 - 땅콩버터에 설탕, 소금, 액상 포도당, 자가리, 꿀, 식용유 및 지방 추가 허용
 - 기타
 - 강화 쌀 커널(FRK) 준비를 위한 쌀가루 및 비타민-미네랄 프리믹스 기준 추가
 - '정어리 오일(sardine oil)'을 '어유(fish oil)'로 대체하고, 어유에 대한 세부 제품 기준 명시

(*) 발효일 : **2025년 5월 11일** (단, 강화 쌀 커널(FRK)관련 조항은 **즉시 발효**)



SPS

출처 : FSSAI,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NOTIFICATION, 2024.10.21

이집트, 초콜릿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식품 안전 기준 발표

- 2024년 10월 25일, 이집트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을 발표함. 이집트 표준 ES465-3 '코코아 및 그 제품: 초콜릿'의 부분 개정이 포함된 장관령 No.447/2024에 따라, 생산자와 수입자는 6개월의 전환기간 동안 새로운 기준을 준수해야 함
- 주요 내용(일부 발췌, 자세한 내용은 [원문](#) 참조)

CODEX 87-1981

- 초콜릿: 건조 물질 기준으로 최소 35% 코코아 고형물(최소 18% 코코아 버터, 14% 탈지 코코아 고형물) 포함
- 밀크 초콜릿: 최소 25% 코코아 고형물(탈지 코코아 고형물 2.5% 이상)과 12-14%의 우유 고형물(우유 지방 2.5-3.5% 포함) 포함
- 화이트 초콜릿: 최소 20% 코코아 버터와 14% 우유 고형물 포함
- 식품 첨가물 : 산도 조절제, 산화 방지제, 벌크제, 색소, 유화제, 광택제, 감미료 등 사용 가능하며, 일부 향료(바닐린, 에틸 바닐린)는 100mg/kg 이하로 허용

출처 : ePing, Egypti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, 2024.10.25



SPS